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60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0. 28. ~ 2021. 11.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경	1979.03.2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055	2,260,0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2	명주열	1972.03.0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31	18,00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3	안장호	1964.05.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22	18,000,000	부산 남구 석포로64번길
4	이철희	1970.02.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09	12,600,000	부산 북구 덕천로
5	이도남	1943.08.0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386	27,000,000	부산 중구 동광길
6	김희영	1981.03.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658	18,000,0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76번길
7	김동식	1971.09.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54	31,8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34번길
8	김재경	1969.12.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	손성재	1962.07.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7 길
10	정선덕	1960.02.1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 길
11	김현덕	1976.04.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25 길
12	라상택	1967.01.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 11 길
13	노기욱	1964.10.0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833	31,860,000	경북 안동시 평화 3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채납자 주소
14	노선태	1960.12.3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칠봉길
15	윤소영	1979.12.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1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8 번길
16	윤소영	1979.12.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66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8 번길
17	장석원	1977.07.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7	31,860,0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본길
18	조병득	1965.11.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24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 25 길
19	조병득	1965.11.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807	30,78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 25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